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4가단242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1. B

2. C

3. D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5. 2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179,258원 및 그 중 15,958,967원에 대하여 2024. 3. 4.부터 2024. 3. 20.까지 연 11.4%,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가. 피고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 중 6분의1에 대하여 2023. 10. 5.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 중 6분의1에 대하여 2023. 10. 5.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B에게,
가.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 6분의1에 관하여 2024. 1.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접수 제23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D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 6분의1에 관하여 2024. 1.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접수 제23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홍사빈

별지